

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2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5. 12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5. 15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06. 0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기결

2. 제정이유

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속에서 군정 주요 현안과제 해결, 국·도비 확보 등 군정발전을 위해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대외협력관의 임무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대외협력관의 위촉 및 품위유지(안 제3조 ~ 안 제4조)

다. 대외협력관의 임기 및 위촉해제(안 제5조 ~ 안 제6조)

라. 보상 등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1) 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: 해당사항 없음

2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530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3. 30. ~ 2023. 4. 18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□ 조례 제정의 취지(필요성)

-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대외 협력관으로 위촉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 검토

○ 안 제2조(임무)

- 주요 현안과제 해결, 국·도비 확보,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협조·지원
- 「고성군 국제자문관 운영 규정」에 따른 국제자문관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협조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관의 자격 및 임무가 유사하므로 각각의 역할(임무)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

<고성군 국제자문관 운영 규정>

제2조(구성 등)

② 자문관과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.

- 1. 고성군(이하 “군“이라 한다)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

제3조(임무) ① 자문관은 주로 경제, 사회, 문화 분야 등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지원과 자문을 한다.

- 1. 군의 역점사업 해외홍보 지원
- 2. 외국기관 및 기업·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지원
- 3.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
- 4. 투자 유치를 위한 알선 및 지원, 정보 제공
- 5. 기타 경제·문화·교육·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 등 자문

○ 안 제3조(위촉)

-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
- 제2조 각 호별 2명 이내로 위촉

○ 안 제5조(임기)

- 임기 1년, 연임 가능

○ 안 제7조(보상 등)

-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 범위 내 경비 지급 가능토록 규정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분야별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, 자문관, 홍보대사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 역할(임무)을 다할 수 있도록 위촉 이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6. 2. 원안가결